

의 정 정 보 2011-5호

1.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2
2.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20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66
4. 행복한 책읽기 88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 [석면안전관리법 \(3\)](#)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 [한부모가족지원법 \(15\)](#)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7\)](#)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1\)](#)
-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6\)](#)
-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31\)](#)
- [전라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7\)](#)
- [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57\)](#)
-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60\)](#)
-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6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 [지역 녹색경쟁력지표 개발, 지방 녹색성장 촉진 \(67\)](#)
- [지자체 입찰시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72\)](#)
-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73\)](#)
- [취약계층 밀집지역, “희망마을” 만든다 \(79\)](#)
- [국가기반시설, 국민안심 기반으로 탈바꿈 \(83\)](#)
-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87\)](#)

행복한 채워기

- [생각버리기 연습 \(88\)](#)

최근 제·개정 주요 법률

1. 석면안전관리법 3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3.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9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5. 한부모가족지원법 15
6.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17

[공포 2011. 4. 28 시행 2012. 4. 29]

1. 제정 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사항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한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 1)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2)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또한 지질작용 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이 없어 석면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2)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 1) 지질작용 등 자연적으로 생겨 지질대를 형성하는 등 토지에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비산(飛散)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 2)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

- 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부칙 제3조)
- 1) 석면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 2)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안 제28조 및 제30조)
-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석면 비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감리인이 없어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2)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 2011. 4. 28 시행 2011. 4. 28]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1년 내에 물건 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거쳐 실제 보상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는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4. 28 시행 2011. 4. 28]

1. 개정 이유

도서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 절차 개선(안 제7조)

- 1) 도서 자연생태계 등의 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단지 사전통지만 하고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수 있어 국민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타인의 토지에 출입·조사하는 경우를 명확히 명기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경우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함.
- 3)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및 사유재산 보호에 기여함.

나.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 폐지(제12조의3 삭제)

- 1) 지역·지구의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에 따라

그동안 지정실적이 없는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통합·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 특정도서는 폐지하고, 자연생태계 등의 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도서를 국가가 관리하는 특정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시·도 특정도서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특정도서로 일원화함으로써 특정도서의 일관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4. 14 시행 2011. 4. 15]

1. 개정 이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안 제8조제4항·제5항 신설 및 안 제42조제4항)

- 1) 현재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적기에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토지 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

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용도지역 등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관련 조례에 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3조제2항).

-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부령에 두고 있으나, 하위법령에 따라 조례 내용 및 존립 여부가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자체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1)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실효되나, 실효될 때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라.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안 제49조, 제51조제1항·제3항 및 현행 제51조제4항 삭제)

1) 지구단위계획을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함에 따라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존 시가지의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발, 용도지역상의 제한을 넘는 복합용도개발, 유희부지 및 입지 부적격시설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심재개발 등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는 대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희토지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안 제58조제3항)

- 1)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별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공포 2011. 4. 12 시행 2012. 1. 1]

1. 개정 이유

실제 설치·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하나의 복지시설이 하나의 지원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호대상자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그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모(母)나 부(父)는 임신, 출산 및 양육을 이유로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보호대상자 중 아동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 다.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 복지 급여 실시하고, 복지 급여를 의무화함(안 제12조).
- 라. 가족지원서비스에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추가함(안 제17조제5호 신설).
- 마.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학교, 평생 교육시설 등의 교육비 또는 검정고시를 위한 교육 지원을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재분류함(안 제19조)

3.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4. 7 시행 2012. 4. 8]

1. 제정 이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고, 강제 집행력을 지닌 조정기구나 수단이 없어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

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안 제3조).

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안 제6조).

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제1항).

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33조).

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안 제25조제1항).

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안 제46조).

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안 제47조).

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1조).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51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정 조례

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1
2.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26
3.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31
4. 전라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7
5. 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57
6. 울산광역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60
7.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63

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1. 제정 이유

-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 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한 관광 충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 도내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수습근무 및 표식(안 제6조 ~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급(안 제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사무의 위탁근거(안 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양성된 해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될 심화된 표현기술 및 기획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과 새로운 해설 인력의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과정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수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관 광 기 본 법」

제1조(목적) 이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제정 이유

- 고부가가치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촬영지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영상산업 육성 시책수립 (안 제3조)
- 영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 영상위원회 구성 (안 제5조)
- 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안 제10조)
- 특화사업의 추진 (안 제11조)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 가. 영화
 -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
 - 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
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 육성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수립·시행

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
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영상관련 촬영장 구성에 관한 사항
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연기자,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등

2.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데 대하여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
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지 방 자 치 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1. 제정 이유

-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주요 내용

- 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안 제3조~제4조)
- 다.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수행 시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안 5조~제7조)
- 라. 임금청구, 임금·임대료지급,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안 8조~제11조)
- 마. 기타, 관공사 관련 기업체 협조 홍보 및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안 12조~제14조)

전라북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 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 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 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⑧ “관급공사”란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 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11조(상담) 도지사는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 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라북도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

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진흥 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학교·사회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 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자, 도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7조, 제8조)
- 환경교육진흥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안 제11조, 제12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등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안 제19조)
-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20조)
-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21조)
-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위탁 등(안 제22조, 제23조)
- 환경교육의 위탁 등(안 제24조)
- 재정지원 등(안 제25조)

전라남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환경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여건을 조성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환경보전을 통하여 도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도민이 다음 각 호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용 및 지원한다.

1. 인간과 자연 그리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미래세대가 이를 유지 계승해 나가기 위한 환경교육 시행
2.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환경교육의 활동 촉진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0조 및 「전라남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0조에 의한 환경교육 및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3. 사회 환경교육의 인력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 4. 환경교육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
- ② 도지사는 환경교육 시책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교육을 위하여 도의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도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전라남도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
 3.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방안
 4. 습지에 대한 대중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6. 지역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7.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연수 방안
 8.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
 9.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10.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초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교육감, 시장·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미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① 관계 기관의 장은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을 연차별로 소관업무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의 추진실적을 조사·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

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한 기관에 대해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
3.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4.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의원, 도 관계 공무원, 교육계·학계·관련 전문기관·환경시민단체 및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환경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전라남도교육청 환경교육센터의 설립·운영
4.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7.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① 도지사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환경교육센터

(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과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지원·조정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도 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환경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등의 실시를 도 환경교육센터,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 따라 인증을 받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도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단체, 그 밖의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를 준용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교육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 분야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 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국가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① 제12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사회환경교육지도사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환경교육을 수행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사회환경교육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환경교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법 제16조에 따른 환경교육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3. 환경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의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현황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환경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4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지정 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최근 1년간 환경교육 관련 사업 실적
 2. 환경교육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 ②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또는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세부 지정요건(제5조 관련)

1.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일 것

다.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일 것

2. 시설 및 장비

가.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 시설과 교육장비를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3. 인력

가.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나.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1. 제정 이유

- 가.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장애가 없는 의원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증장애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 나. 중증장애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 및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하 중증장애의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그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
3. 본회의장 좌석배치의 우선적 고려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진흥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제3조)
- 나.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함.(제4조)
- 다.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동호회의 육성, 선수양성, 체육대회 추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라.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6조)
- 마.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제7조)

울산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 및 전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선수양성과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국가의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 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 헌혈정신 고취 및 헌혈권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나.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4조)
- 다.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5조)
- 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제7조)

울산광역시 헌혈 권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적극 협력하고,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민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권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헌혈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람료·입장료·주차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별한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제4조에 의거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지역 녹색경쟁력지표 개발, 지방 녹색성장 촉진 67
2. 지자체 입찰시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72
3.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73
4. 취약계층 밀집지역, “희망마을” 만든다 79
5. 국가기반시설, 국민안심 기반으로 탈바꿈 83
6.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87

1. 지역 녹색경쟁력지표 개발, 지방 녹색성장 촉진

- 지방자치단체들의 녹색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비교·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됐다.
- 행정안전부는 4월 27일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 4개 분야 15개 지표를 개발·공표함으로써 지역 간 녹색성장 추진 실태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 지표는 전문가 자문과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 행안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은 지역의 실천과 성과 창출 좌우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를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 녹색생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지표는 지역별 녹색성장 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특화된 녹색성장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지표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녹색경쟁력 지표는 녹색교통, 녹색건축물, 녹색생활, 녹색기반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녹색교통은 자전거도로, 녹색교통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이며, 녹색교통 활성화는 버스, 지하철, 자전거 등의 시책 우수사례를 평가하여 승용차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녹색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244개 지방청사의 온실가스 에너지 저감 노력을 측정한다.
 - 녹색생활은 녹색생활 실천, 녹색제품 구매, 탄소중립 프로그램, Green 마을,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이며, 탄소중립 프로그램은 행사 개최 또는 건물 난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비용을 나무심기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기금 등으로 납부하여 상쇄하는 것이고,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은 전기, 가스, 석유의 전년 대비 절감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지표다.
 - 녹색기반은 산림면적, 녹색정보화 수준, 녹색성장 우수사례,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이며, 녹색정보화 수준은 시도 청사의 사무환경, 업무방식 등 5개 분야를 진단한 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점검한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지역 녹색경쟁력 지표가 지역의 녹색경쟁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비교·측정함으로써 지역 녹색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 야 (4개)	녹색경쟁력 지표 (15개)
녹색교통 (3)	▶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정량) ▶ 녹색교통 활성화 실적 (정성) ▶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정량) 및 민간 지원 실적 (정성)
녹색건축물 (3)	▶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정량) ▶ 지방행정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정량) ▶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정량)
녹색생활 (5)	▶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실적 (정량) ▶ 지방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정량) ▶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정량) ▶ Green 마을 점검 결과 (정성) ▶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정량)
녹색기반 (4)	▶ 산림면적 증감률 (정량) ▶ 녹색정보화 수준 점검 실적 (부분정성) ▶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정성) ▶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정성)

※ 4개 분야 15개 지표

에너지 과소비형 공간구조, 도로 중심의 교통체계 등으로 인해 전체 온실가스의 42%가 건물·교통 부문에서 발생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 필요

분야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 사유	비고
녹색 교통 (3)	1. 자전거도로 개설 실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자동차 이용 감소	
	2. 지방행정기관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률(정량) 및 민간 지원 실적(정성)	전기차,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저연료 소비차량 확대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3. 녹색교통 활성화 우수사례	대중교통 활성화, 자전거 시책, 승용차 줄이기 등 교통부문을 종합하는 지표를 녹색교통 활성화	
녹색 건축물 (3)	4. 지방행정기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발전량	신재생에너지 필요성 교육·홍보 효과 및 육성·발전 기여	
	5. 지방행정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 실적	지방행정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6.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인허가 실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분야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 사유	비고
녹색 생활 (5)	7.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가입	가정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 절감 프로그램 참여로 녹색생활 실천 확산	
	8. 지방행정기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지방행정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확대로 녹색기업 활성화 촉진	
	9.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실적	온실가스 발생비용 상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설비, 나무심기 등 투자	
	10. Green 마을 시범사업 점검 결과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Green 마을’ 시범사업 96개소의 점검결과 반영	
	11. 가정부문 에너지 절약 실적	전기, 가스, 석유 등의 전년도 대비 절약 실적을 평가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유도	
녹색 기반 (4)	12. 산림면적 증감률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숲 보존국 보상’에 합의하는 등 대표적인 탄소흡수원 개발에 상응하는 보상 필요	
	13. 녹색정보화 수준 점검 실적	친환경 정보화 환경 구축 및 활용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에 기여	
	14. 지역 녹색성장 우수사례	우수사례를 통해 독창성, 주민 참여도, 저탄소 녹색성장 확산 가능성 등 파악	
	15. 지방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정기회,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견인	

2. 지자체 입찰시 여성·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은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을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예규에 따르면 우선,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 토목이나 건축공사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시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여 평가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기업도 물품 구매(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시 가점(0.5점)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립기반이 열악한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기회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중소기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 기술개발 투자비율 만점 평가비율을 하향조정(200%⇒150%)할 계획이다.

3. 구제역 검사 기능 등 33개 사무 지방이양 확정

-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방호)에서는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 정밀검사 기능’을 시도가 국가와 공동수행토록 하는 등 10개 기능 33개 사무를 시도에 이양하는 것을 4월 22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해당부처에 통보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으로 이양될 예정이다
- 이방호 위원장은 이번에 지방 이양하는 사무에 대해
 - 구제역 검사와 관련하여 “가축질병 확진 판정권한의 중앙 독점으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그동안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사무에 대해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한 해제허용총량의 범위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권한을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입안부터 결정고시까지 1년 6개월~2년이 소요되어 빠르게 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하여 왔지만 이번 이양확정으로 국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에 이양

- 주택공급관련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입주자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이양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있어 시·도별 주택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과적인 주택수급체계 구축으로 주민편익 증대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분은 관련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시도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추진

-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와 종묘생산업자가 생산한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 등 관리·집행기능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특화된 묘목생산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 국유림(산림청 소관제외), 공유림,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현지사정을 잘 아는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지역에 소재한 산지의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그밖에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업무 등을 지방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고, 국가문화재에 관련한 경미한 허가권한 등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의 문화재 중요성 인식제고와 권한과 책임의 일치로 지역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붙임 1

이양확정 사무현황

부처명	기능명	이양확정 사무명	이양효과(사유)
계	10개 기능	33개 사무	
농림수산 식품부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기능 (1개 사무)	1.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 중앙의 독점적 권한행사 방식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해소하고 지방도 주민과 밀접한 집행적 사무를 함께 처리
보 건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에 관한 기능 (3개 사무)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 금지 위반 점검 3.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의무 이행 점검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 율성에 기여함
국 토 해양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등 기능 (2개 사무)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2. 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동법 제10조)	▪ 지방 스스로 문제를 결정하 고 해결하여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설정 등 기능 (2개 사무)	1. 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설정 등 (주택법 제38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 제8조(입주자 모집절차), 제11조부터 제12조의2까지(청약가점제 및 채권입찰제), 제19조(분양주택 특별공급), 제30조(대규모 택지개발지역 주택 우선공급), 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영구 국민 장기전세 입주자 선정특례)의 규정을 시 도	▪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효 율적인 주택수급체계 구축 으로 주택시장 변화에 신 속한 대처

		조례로 제정 할 수 있게 주택법 제38조 개정	
		2. 건본주택 건축기준 등(주택법 제38조의3, 같은 규칙 제8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건본주택 건축기준 등)의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주택법 제 38조의 3 개정	
농 촌 진흥청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등 기능 (2개 사무)	1.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2.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에 대한 공무원외여행 (국비, 외국정부자금 및 국제 기구자금 등 지방비 외의 재원으로 여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허가	국가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승급 및 공무원외여행 허가를 지방직과 같이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 행정효율성 제고
산림청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등 기능 (3개 사무)	1.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2. 행정처분 3. 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 명령에 관한 권한	- 단순 관리·집행기능의 지방이양으로 민원인의 행정접근성 용이 → 신속한 행정처리 - 지역특성에 맞는 묘목 관리로 지역별 특화된 묘목 생산 가능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기능 (1개 사무)	1.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검토 결과의 반영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지역에 소재한 산지에 대한 특성 반영 및 신속한 행정처리 가능
소 방 방재청	방염성능검사업무 등 기능 (2개 사무)	1. 방염성능검사 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업무 2.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	현지성, 민원편의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점검 및 지도에 기여하고, 지역 방염업체 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력 강화 기여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기능 (1개 사무)	1. 지역소방 전문치료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권한	지역의료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문화재청	문화재 허가 및 취소 등 기능 (16개 사무)	1.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2.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3.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4.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6.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7. 철책이나 석책(石柵)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8.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의 허가 및 취소 9. 학술·연구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삽수(삽수: 꺾꽂이용	▪ 행정수요자 접근 편의성 및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	------------------------------	--	--

		묘목이나 싹)를 채취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10.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11.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12. 허가 및 그 취소 중 국가지정문화재(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1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14. 신고의 수리 중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15.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16.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취약계층 밀집지역, “희망마을” 만든다

- 주거환경이 열악해 물리적 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나 영세민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생활공간이 만들어진다.
- 이들 지역에는 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되며,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및 경상남도 진주시 등 25개 시·군·구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했다.
- ‘희망마을 만들기’는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 문화적 여유,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는 복합 활용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한 공모 결과, <생활공간 개선형>,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을 기본 유형으로 하여,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에는 48개 시·군·구에서 50개 사업이 응모해, 외부 심사위원이 참가한 심사를 거쳐 최종 25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각각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며,

- 해당 시·군·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 한편, 완공된 희망마을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송영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친서민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011년도 희망마을 공모결과

시 도	시군구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유형
서울시 (2)	노원구	하늘공원 휴먼 라이브러리	· 기존 문화정보도서관을 재활용하여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통문화 공간조성	사회복지 확충형
	은평구	봉산 해맞이 공원조성사업	· 방치된 군부대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6개동 17만여 주민활용 해맞이 공원조성	생활공간 개선형
부산시 (3)	동구	도시형 수직농장 희망마을 조성	· 영세민 밀집지역에 수직농장 건립 및 주민쉼터 등 복지공간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동래구	온고지신 희망마을 만들기	· 영세민 밀집지역을 개선하여 배움공간, 소통의 공간, 일자리 재창출 공간 조성	생활공간 개선형
	사하구	마하골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 기존 공립 어린이집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등 복지시설 구축	사회복지 확충형
대구시 (1)	남구	이천동 드림타운건립	· 마을기업, 자활센터, 주민사랑방등 복합희망공간 조성	사회복지 확충형
인천시 (2)	동구	만석동 공동작업장 건립	· (사)내일을 여는집과 연계하여 만석동 공동작업장, 푸드뱅크, 마을기업 등 운영	수익사업 추구형
	부평구	희망마을 “동네야 놀자”	· 방치된 외골놀이공원을 정비하여 문턱없는밥집, 다문화센터, 학습센터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광주시 (1)	남구	힐링가든 복지문화 희망공원	· 힐링가든 복지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 및 쉼터 등 복지센터 건립	수익사업 추구형
대전시 (1)	유성구	봉명 희망마을 만들기	· 영세민 및 소외계층을 위한 어른들쉼터, 작은도서관, 주민사랑방 등 복지공간 조성	사회복지 확충형
경기도 (2)	가평군	연하리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 연하리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한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장, 주민쉼터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시흥시	보듬어 따뜻한 매화동 이야기	· 호조별 축제의 경험을 살려 매화동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및 소외계층 보드미공부방, 마을사료관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강원도 (2)	화천군	다목마을 오감나들이사업	· 유명소설가 방문객을 활용하여 마을 소득 창출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횡성군	꿈샘마당 조성사업	· 공근면 가곡초교(폐교)를 이용한 도농교류센터 및 주민쉼터 조성	생활공간 개선형

시 도	시군구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유형
충북 (1)	충주시	예쁜동네 만들기사업	· 연수주공 2단지내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조성	생활공간 개선형
전북 (3)	완주군	천호마을 성물공예 체험센터건립	· 천주교 성지순례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농촌체험, 성물공예 판매장 및 주민쉼터, 공원 등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장수군	장수 다문화 희망마을 만들기	· 연엽초 생산조합 건물을 매입하여 인근 취약계층을위한 문화센터, 다문화음식점 등 조성	사회복지 확충형
	정읍시	용계동 정문 희망마을 만들기	· 지역특산물(콩)을 이용한 생산시설 및 판매장, 파고라 등 주민쉼터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전남 (2)	순천시	쉬엄쉬엄 골목길 마을조성	· 마을기업(에코도시락)과 연계하여 공동작업장 및 경로당,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센터 구축	수익사업 추구형
	완도군	청산도 슬로우 갤러리 만들기	· 청산도 슬로시티를 관광객을 활용한 주민소득 공간구축 및 어구를 활용한 테마공원 등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경북 (2)	문경시	생태가 살아있는 오미자 희망마을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오미자 특산물을 이용한 주민소득공간 및 건강관리실, 주민사랑방 등 구축	수익사업 추구형
	영천시	성내동 저지대 희망마을 만들기	· 성내동 저지대 하수관거 설치가 불가한 서민밀집 지역을 철거하고 마을작업장, 주민사랑방, 야외공원 등 조성	생활공간 개선형
경남 (3)	거창군	거창 희망마을 창조발전소사업	· 공동이용시설이 열악한 서민밀집지역을 개선하여 커뮤니티가든, 소규모 공연장, 지역공동체일자리공간 등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진주시	강남동 희망마을 만들기	· 강남동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정비하여 창작등 공방, 창작등 전용전시관, 어린이놀이터 등 취약계층 문화시설 구축	수익사업 추구형
	창원시	진해 희망근대사 마을만들기사업	· 우리나라 근대초기 군사계획도시 진해를 근대역사 스튜디오, 주민사랑방, 근대음식(진해콩 등) 가공 판매장 등 조성	수익사업 추구형

5. 국가기반시설, 국민안심 기반으로 탈바꿈

- 정부는 제13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위원장 :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를 4월 28일(목) 개최하여 최근 금융권의 잇따른 보안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통신·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규모도 대형화되어 국민생활 및 사회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소관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호 관리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 정보보호 강화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정보보호 분야 예산투자를 확대하고 정보보호 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 올해 6% 수준인 정보화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을 선진국 수준(9~10%)으로 확대한다.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투자비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인력·예산 등 정보보호 수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 특히, 행정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를 위한 개인정보 암호화, 신종 DDos 대응장비 및 접근 권한 관리시스템 확충 등 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정보보호 예산을 9%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정보보호책임자(CSO)가 정보보호 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담당자가 일정시간(책임자 : 연 16시간, 실무자 : 연 40시간) 이상 정보보호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CSO포럼,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보보호 관련 현안 공유 및 토론을 정례화한다.
- 아울러,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석사과정(야간·주말)을 신규 개설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용연계형 석사과정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취약점분석사, 보안관제사 등 분야별 전문자격증을 신설하여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둘째,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 예방 및 복구체계를 강화한다.

- 최근의 사이버침해 요인을 감안한 취약점 분석 및 평가기준(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196개 항목)을 5월까지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정보보호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계획이다.
- 또한, 재난이나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원격지백업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백업 모의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 셋째,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시스템관리자(root) 권한부여 금지 등 보안관리 지침을 7월까지 마련하고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한다.

※ 의무준수 사항 : 주요 명령어 입력시 사전 승인, 운영PC 인터넷 (유·무선) 연결 금지, 시스템 변경 작업시 내부직원과 공동 실시, 노트북 원칙적 반입금지 등

- 또한, 서버 접속시 공인인증서 등 보안성이 강화된 인증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원격접속제어시스템, 자료유출 검사시스템 등을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조기에 설치하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신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한다.

- 제2금융기관 중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핵심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관에 대해 금년 중 신규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유통, 물류, 석유·화학, 철강 등 분야의 정보시스템과 제어시설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지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 다섯째, 정보통신기반 보호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인적·물리적 위협으로부터 기반시설을 보호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발생시 기반시설 관리기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에 사고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 또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반시설 보호에 필수적인 핵심시스템 이중화, 원격지 백업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한편, 신규 기반시설 지정권고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

6. 공무원 직종통합 검토하기로

-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게 세분되어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 분류를 행정환경의 변화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한나라당과 행정안전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정부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직·별정직 등 소수 직종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직종으로 합치는 등 공무원 직종을 합리적으로 재분류하여 통합·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 ※ 현행 공무원 직종(7종) :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조만간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개선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지난 1981년에 확립된 것으로서,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못하여 경직된 인사운영을 유발하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 학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직종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생각버리기 연습

저자명 : 코이케 류노스케

출판사 : 21세기북스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244

가 격 : 12,000원

실패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과연 이 ‘생각’한다는 일이 좋기만 한 것일까?

내일까지 작성해야 할 서류 때문에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보자. 처음에는 시간 안에 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몰입해서 일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득 어떠한 계기로 딴 생각이 들게 되면, 곧 당신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할 것이다.

‘아, 배가 고프걸. 뭐라도 먹고 할까? 아니지, 차라리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 그러려면 8시까지에는 마쳐야 할 텐데, 가능할까? 그러게, 왜 부장은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애기를 해주는 거야? 원래 이 일은 김 대리가 해야 할 일 같은데 왜 나한테 시킨 거지? 혹시 부장한테 찍혔나? 내일은 술 한 잔 같이 해야겠는 걸. 근데 부장은 너무 폭탄주를 좋아해서 원.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마누라는 또 늦는다고 잔소리나 할 거 아냐. 누구는 술 먹고 싶어서 먹냐고. 가만, 내일모레 애랑 어디 간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이 정도 되면 제때 일을 해내기란 불가능하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 사이에서 휘둘리다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들, 왜 이렇게 멈추기가 힘들까?

하지만 이렇게 머리를 아프게 하는 수많은 생각을 멈추고 싶어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을 멈추자’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미 당신의 머릿속에는 ‘뭐야, 이미 생각하고 말았잖아’라는 생각이 들 테니 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생각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일수록 내 의지대로 컨트롤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서 생각을 버리는 법에 대해 강연을 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저자는 우리가 생각을 멈추기 어려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의 뇌는 자극을 추구한다. 그런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나치게 평범한 일상이기 때문에 별 볼일이 없고,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생각이야말로 자극적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얻기 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몰고 가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병’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갖 잡

다한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고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려면,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 열도를 뒤흔든 생각 버리기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릴 수 있을까? 저자는 우선 우리를 괴롭히는 잡다한 생각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분노’의 에너지에 휘둘리기 쉽다. 이때의 분노란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분노보다 더욱 폭넓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모든 감정을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도, 과거를 후회하는 것도, 쓸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긴장하는 것도 모두 이 ‘분노’의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잡다한 생각의 근본 원인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과정을 말하기, 듣기, 보기 같은 8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하기’ 영역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응시’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만약 분노 에너지가 들끓어 화가 난다고 생각되면, 이 감정을 따옴표로 묶어버린다. 즉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나는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라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몸에 익히면, 우리를 괴롭히는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메 모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1년 5월 10일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 606-5021 / 팩스 (042) 606-5029